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34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조인철・박용갑・이건태

한정애 • 안도걸 • 문진석

양부남 • 민형배 • 전진숙

박수현 · 위성곤 · 이개호

박민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암표 거래 수법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부정판매한 자는 가중처벌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제42조의2및 제42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입장권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제4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0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42조의3(형의 가중) 상습적으로 제40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생 략)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u>「정보통신망 이</u>	② <u>입장권등</u>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	
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0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u><신 설></u>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u>1.</u> ~ <u>6.</u> (생 략)	$2. \sim 7.$ (현행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와 같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u><</u>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0조제 <u>1</u>
	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신 설>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 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제42조의3(형의 가중) 상습적으로 제40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제40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